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1순위	2025.04.01.(화)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청약 Home)
2순위	2025.04.02.(수)		

■ 일반공급 청약자격 안내

구분	내용
----	----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 전용 59m²형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전용 84m²형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p> <p>①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부부간 중복신청하여 모두 당첨 시 선신청분 유효, 후신청분 무효 처리(단, 예비신혼부부 제외)]</p> <p>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p> <p>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모집공고<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p> <p>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입주자모집공고<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p> </div>
-----	--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순위 → ②지역 → ③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④추첨 • ①순위</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단계</td> <td>우선공급 (80%)</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td> </tr> <tr> <td>잔여공급 (20%)</td> <td>2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에 해당되는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8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공급 (20%)	2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에 해당되는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8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공급 (20%)		2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에 해당되는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p>•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③<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p>									
<p style="text-align: center;">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p> <p>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p> <p>※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td> </tr> <tr> <td>2순위</td> <td>-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내용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단계	내용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소득기준 (전용 59m ² 에 한함)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전용 59m ² 형 신청자	100% 이하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유무·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자격 미속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자산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p>건축물</p>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건물, 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내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부간 중복신청하여 모두 당첨 시 선신청분 유효, 후신청분 무효 처리(단, 예비신청분부 제외)] · 동일단지 내 주택공급신청자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